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20553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김영석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6155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83,818,6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3,818,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7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 그 이하 "피고 A"을 모두 "A"로 각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1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18 내지 19행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음에 "(이하 '별지2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제1

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만료일 후부터 제2보증약정 체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A과의 대출약정을 보증소멸을 이유로 종료시키지 않은 사실,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구보증서(제1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성격에 관해 확인 요청을 한 데 대해 중소기업은행은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가 갱신보증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보증약정은 그 실질상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 24. 원고와 A, B 사이에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2보증약정이 갱신보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2017. 8. 4.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B의 재산상태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권선구청장, 예산군수, 화성시장, 화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E조합, F기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

과,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 24. 당시 B의 적극재산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67,701,400원이고, 소극재산²⁾은 5,287,19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목록		가액(원)	채무내역		가액
적 극 재 산	수원시 권선구 G 대 163㎡	146,700,000	소 극 재 산	원고	255,866,000
	H 대 1048㎡	1,215,680,000		I단체 서인천지점	571,000,000
	H 건물	106,947,000		I단체 서울시	591,000,000
	J 도로 6㎡	2,133,600		기술보증기금	847,425,000
	K 도로 6㎡	2,133,600		L	14,940,000
	M 도로 18㎡	6,400,800		기업은행	1,886,750,000
	N,O 공장용지 1271㎡	1,143,900,000		P	24,043,000
	N,O 건물	139,480,000		Q	27,250,000
	R 도로 40㎡	14,224,000		S	175,000,000
	T 공장용지 1972㎡	1,597,320,000		U	43,920,000
	V 공장용지 469㎡	422,100,000		E조합 (2005. 5. 10.자)	200,000,000
	V 건물	51,480,000		E조합 (2006. 1. 16.자)	50,000,000
	W 도로 54㎡	19,202,400		E조합 근저당채무	600,000,000
		4,867,701,400			5,287,194,000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 2016. 7. 14. 기준 감정평가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기초로 한 금액보다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이 더 크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F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016. 10. 28.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7. 1. 24.이므로 이에 가까운 일자의 소극재산을 인정한다.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병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B)과 매수인(피고 C)간 별건 판넬대금 11억 원(계약일 현재의 기확정대금 600,627,764원과 17년 12월까지의 거래분대금 499,372,236원을 합한 금액)을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 수수를 하는 것으로 갈음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실제로 별지1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판넬대금 11억 원 및 이와 별도로 피고 C이 승계하기로 한 B의 대출금 채무 3,566,121,714원을 공제한 합계 1,600,878,286원만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는 채무초과상태인 B이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C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사업 계속 목적 자금 융통을 위한 매각이라는 주장

(1) 피고 C의 주장 요지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C에게 별지1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B의 위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 25842 판결 참조).

그러나 을나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B의 별지1부동산 매각이 사업 계속 추진이나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은 별지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에서 보더라도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을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

(1) 피고 C의 주장 요지

B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별지1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A의 운영자금 내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B의 위 부동산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제9호증, 을나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별지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개발부담금) 113,892,0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동산의 나머지 매매대금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1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별지1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1) 피고 C의 주장 요지

별지1부동산에 관해 2016. 8.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외 A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는 AB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합하면 그 가액이 별지1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B의 위 부동산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2017. 1. 24.부터 2017. 4.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3,200,000원의 출금내역이 존재하고 그 거래기록사항으로 "AB, AC, AD, AE"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이 AB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또는 차용증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B의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인출된 내역만으로 위 돈이 A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이 별지1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이 선의라는 항변

(1)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은 A과의 사업관계를 지속하고 장차 거래량을 늘리고자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당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던 A로부터 별지1부동산을 시가보다 고액에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A 뿐 아니라 B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AF과도 물품거래를 하였는바, B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1부동산은 당시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피고 C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D은, 별지2부동산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과 B의 이혼은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고, 설령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D과 B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나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과 B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7. 2. 13.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0. 18. 피고 D과 B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었다가 취하간주 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는바, 이와 함께 피고 D과 B의 혼인생활이나 기간, 재산관계나 이혼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과 B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협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2부동산은 모두 B이 혼인생활 중에 마련한 재산이고, 피고 D은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과 B은 2017. 5. 18. 협의이혼을 전제로 별지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피고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등부 2017년 제1862호로 인증을 받기도 한 점(위 합의서 제3항의 모두에는 B이 혼인기간 중에 피고 D에게 빌린 4억원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이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가 2017. 5. 25.자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실제 해당일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점, 제3항의 소재목이 재산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D과 B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 4,867,701,400원 상당의 별지1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D이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2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합계 38,337,849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과 B이 이혼하면서 피고 D에게 별지2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

별지1목록

부동산의 표시

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163㎡

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1048㎡

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04.55㎡(탁구장)

2층 93.5㎡(소매점)

3층 198.05㎡(소매점)

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 6㎡

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 6㎡

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 18㎡

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장용지 408㎡

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장용지 863㎡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53.6㎡

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 40㎡

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장용지 1972㎡

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장용지 469㎡

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93.6㎡

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 54㎡

(위 현 (주) 소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년 2월 9일

접수 제11970호

소유자 주식회사

별지2목록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26㎡

(갑구18번 공유자지분 2268분의 638 지분전부)

㉡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623㎡

(갑구16번 공유자지분 2268분의 2104.18 지분전부)

㉢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1615㎡

(갑구32번 공유자지분 805739650000분의 62706044117 지분전부)

㉣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27㎡

(이상 현 소유 내지는 공유지분,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관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표시

1.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년 10월 31일

접수 제23016호

소유자(공유자)